

외국인 연구원 비자 관리 매뉴얼

□ 유의 사항

- ▶ 이 자료는 외국인 연구원 비자(E-3) 신청을 위한 일반적인 안내사항으로, 고용된 외국인의 상황에 따라 별도의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니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사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▶ 외국인 연구인력 고용 및 체류관련 업무처리 시 관련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**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에게 과태료 등의 패널티가 발생** 할 수 있으니 의무사항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▶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의해 **신청일로부터 최근 1개월간** 법 제19조 또는 법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**신고의무를 2회 이상 미이행**할 경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**사증·체류 업무가 제한**되오니 의무사항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관련 법령

- ▶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- ▶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「외국인 체류민원 안내매뉴얼」

2025. 8. .

|| 목 차 ||

I. 연구(E-3) 비자의 신청 자격	1
II. 연구(E-3) 비자 신청 및 발급 절차	2
III. 연구(E-3) 비자 사증발급 준비 서류	3
IV. 외국인의 체류	5
V. 체류자격 변경 허가	7
VI. 유학(D-2) 비자의 연구개발과제 참여시 제한 사항 ...	8

[붙임] 필요 서류 양식

I 연구(E-3) 비자의 신청 자격

□ 자격요건

- 1) 박사학위 소지자(취득 예정자-비자 6개월 가능)
- 2)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다음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자

【경력요건 면제 대상자】

구분	세부 내용
경력자	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
국내 석사 학위 소지자	국내 대학을 졸업한 석사 학위 소지자
해외 우수대학 석사 학위 소지자	① TIMSE誌 선정 세계 200대 대학 또는 ②QS 세계 순위 500위 이내 해외 우수대학 졸업 석사 학위 소지자
우수 학술논문 저자	SCIE, A&HCI, SCI, SSCI 등재 논문 저자* * 주저자, 공저자(제2저자 이하), 교직저자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

□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: 5년

□ 관리기준

- 전공분야와 종사분야가 상이한자,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저임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, 자격변경, 기간 연장 등 제한
- 박사 취득 예정자가 학위 취득이 확정되었음을 관련 서류로 입증 시 체류기간 6개월 이내에서 조건부로 사증 발급 등 허가 가능

□ 활동범위

- 1)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
- 2) 고급과학 기술인력
- 3) 사회과학·인문학·예체능 분야의 연구 인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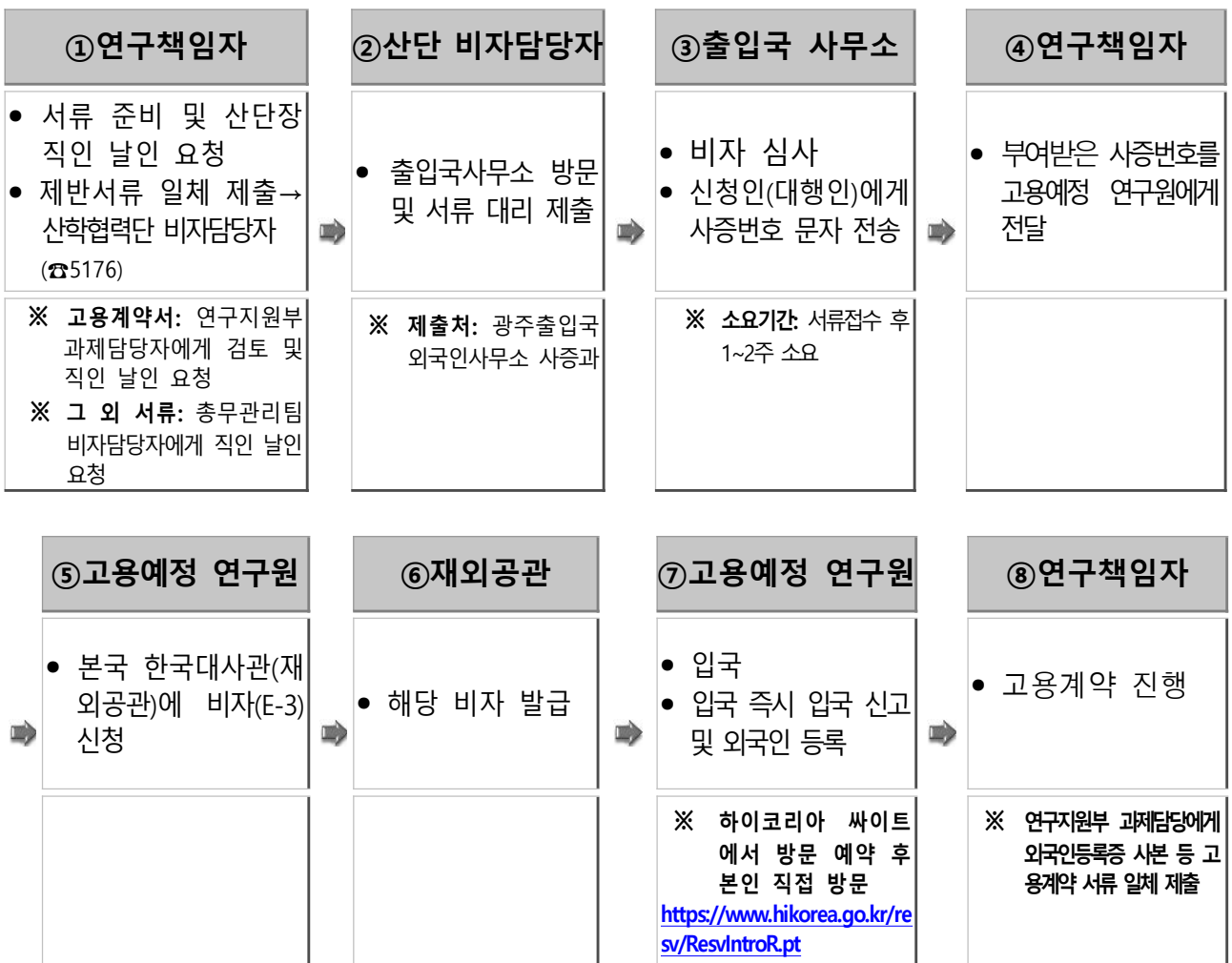
□ 해당자

- 1)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,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,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

기관에서 자연과학·사회과학·인문학·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 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

- 2) 방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
- 3)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동 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
- 4) 정부출연연구소, 국·공립연구소,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자연 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
- 5)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기타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사회과학·인문학·예체능 분야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

II 연구(E-3) 비자 신청 및 발급 절차



III 연구(E-3) 비자 사증발급 준비 서류

□ 연구 책임자/사업단 및 센터

- 1) 사증발급인정신청서
- 2) 고용계약서 원본(국문 또는 영문 고용계약서)
- 3) 초청사유서
- 4) 연구계획서
- 5) 연구원 활용 계획서
- 6)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증

□ 고용 예정 연구원

- 1) 여권사본
- 2) 컬러 사진 1매(이미지 파일)
- 3) 석사, 박사 학위증 사본(원본대조필)
- 4) CV 또는 이력서: 신상정보(연락처, 주소), 교육 이력, 근무 이력 포함
- 5) 최종학력이 석사 학위소지자인 경우(해당자)
 - 가)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
 - 나)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·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
- 6)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(해당자)
- 7) 가족 동시 입국 시(F-3(동반) 비자)(해당자)
 - 가) 가족별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및 여권 사본
 - 나) 가족관계 입증서류: 결혼증명서(배우자 초청 시), 출생증명서(자녀 초청 시) 원본
 - 다) ~~재정증명서(은행잔액증명서 등)~~ ※'25. 7. 1.부터 E-3비자의 동반자는 재정입증서류 제출 제외
- 8) 중국인의 경우 추가 서류: 거민신분증 사본

※ 각 공관장은 초청의 진성성,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
□ 연구 책임자/ 사업단 및 센터 서식 상세 안내

1) 사증발급인정신청서 ☞ 붙임 1

- 가) 모든 비자발급 신청에 사용되는 공통 신청서
- 나) 피초청자는 초청 대상 외국인 연구원(외국 주소, 외국 연락처, 사진)
- 다) 초청자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

2) 고용계약서 ☞ 붙임 2, 3

- 가) 입국 후 학교 정식 계약서와 별도로 제출하는 출입국용 계약 서식임
- 나) 계약당사자 A-산학협력단장, B-지도교수, C-연구원
- 다) 고용계약서 작성 시, 계약시작일은 비자발급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후로 작성
예시) 신청일이 2025. 8. 1.이면, 계약기간은 2025. 9. 1. ~ 2026. 8. 31.로 작성
- 라) 연구원 서명을 받은 후, 지도교수 서명 날인

3) 초청사유서 ☞ 붙임 4

- 가) 초청자인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발급되며 지도교수가 작성하는 초청 이유 설명서
- 나) 외국인 인적사항, 프로젝트명, 지도교수, 초청의 사유 등 필수 기입
- 다) 내용 중 “**분야에 우수한 *** 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초청하는 바입니다” 라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- 라) 지도교수 직인 및 산학협력단장 직인 반드시 필요

4) 연구계획서 ☞ 붙임 5

- 가) 외국인 연구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지도교수의 구체적 계획 설명서
- 나) 연구 내용, 담당 업무, 담당 분야, 활용 계획 등 기술
- 다) 내용 중 “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*** 연구원을 초청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” 라는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- 라) 지도교수 직인 날인

5) 연구원 활용 계획서 ☞ 붙임 6

- 가) 외국인 연구원 활용 계획서
- 나) 직급, 인적사항, 활용 계획 등 기술
- 다) 지도교수 및 산학협력단장 직인 날인

IV 외국인 체류

□ 체류기간 연장 허가

1) 신청방법: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관할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본인이 신청

※ 단, 신청당일 본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(해외에서 민원신청 및 대리는 불가)

2) 제출서류

가) 통합신청서,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, 수수료

나)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 확인서 ※ 발급 담당: 연구지원팀 해당 연구과제 담당자

다)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증

라) 체류지 입증서류(임대차계약서, 숙소제공 확인서)

마) 국내·외 은행 잔고증명서(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내역서)

※ 발급 담당: 재무회계팀 원천징수 담당자(☎530-5037)

□ 근무처 변경·추가 신고

1) 신고절차: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(기한내 미신고시 과태료 발생)

예시)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으로서 타 대학교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 받을 경우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근무처 추가 신고

2) 제출서류

가) 통합신청서,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, 수수료 없음

나) 사업자등록증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

다)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

라)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※ 발급 담당: 연구지원팀 해당 연구과제 담당자

※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

3) 체류허가 절차: 근무처 변경·추가 신고는 허가가 아닌 사후신고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최초 부여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이 필요함

□ 신분 변동자(해고 또는 중도퇴직자) 처리

- 1) 신고절차: 신고 의무자(고용인)는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
- 2) 해고 또는 중도 퇴직 등의 사실이 신고 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체류자격 또는 근무처 변경, 체류기간 조정 및 출국기한 등을 지정
- 3) 동일 직종에 계속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직(D-10)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용
- 4)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분변동일로부터 즉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안내
- 5)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반 사항을 심사하여 체류허가 여부 결정

□ 외국인등록

- 1) 등록 시기: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즉시
- 2) 제출 서류: 통합신청서, 여권사본, 컬러사진 1매(3.5mm×4.5cm), 수수료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체류지 입증서류(임대차계약서, 숙소제공확인서 등)
- 3)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
 - 가) 신고사항: 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및 국적, 여권의 번호·발급일자·유효기간
 - 나) 신고기한: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
 - 다) 제출 서류: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, 변경사항 입증서류, 외국인 재학여부 신고서, 외국인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

□ 재입국 허가

- 1)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: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
※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을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

V 체류자격 변경 허가

□ 유학생(D-2), 구직(D-10) 등 → 연구(E-3)자격으로의 변경

1) 자격요건

- 박사학위 소지자(취득 예정자-비자 6개월 가능)
-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

구분	세부 내용
경력자	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
국내 석사 학위 소지자	국내 대학을 졸업한 석사 학위 소지자
해외 우수대학 석사 학위 소지자	① TIMSE誌 선정 세계 200대 대학 또는 ②QS 세계 순위 500위 이내 해외 우수대학 졸업 석사 학위 소지자
우수 학술논문 저자	SCIE, A&HCI, SCI, SSCI 등재 논문 저자* * 주저자, 공저자(제2저자 이하), 교직저자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

2) 제출서류

- 가) 통합신청서,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, 표준규격사진 1장, 수수료
- 나)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증
- 다)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
- 라)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 확인서
- 마)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(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해당)
- 바)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·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(해당자)
- 사) 우수 학술논문의 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(해당자)

3) 유의사항: 체류자격 변경 승인일로부터 고용계약체결 가능

- 계약시작일은 비자변경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후로 작성 예시) 신청일이 2025. 8. 1.이면, 계약기간은 2025. 9. 1. ~ 2026. 8. 31.로 작성

VI 외국인 유학생(D-2)의 연구개발과제 참여시 제한 사항

(주의사항) 유학생은 연구자격으로의 자격외활동이 금지되어 있음

- 학생(D-2)의 일반 기업(대학 산학협력단 포함) 또는 단체의 연구원으로 자격 외 활동은 금지되며, 자격변경(E-3)을 통해서만 취업이 가능함
- 소속 대학이 아닌 외부 연구소로의 파견, 지원 근무는 엄격히 금지됨
- ‘학생연구원’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하려는 사람은 별도 허가 불필요함

□ 외국인 유학생(D-2비자)의 수익적 연구활동 시간제 취업허가 기준

- 1) 유학생의 영리,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
- 2) 사전에 대학의 확인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은 경우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(단순노무 등)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되나, 전문분야인 연구에서의 시간제 취업은 제한
- 3) 학위과정 유학생(D-2-5* 제외)의 학업과 연관된 소속대학 내 수익적 연구 활동은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(시간제 취업허가의 특례)

* 연구과정(D-2-5) 유학생은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이미 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시간제 취업은 허용하지 않음

※ 학업 연계 여부는 학점 취득·졸업 연계, 논문 작성 연계 등 대학(지도교수·연구책임자)의 판단에 따름

- 4) 학업과 무관하거나 학업과 연계된 외부 기관의 연구 과제 참여는 사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

※ 단,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에서의 수익적 연구(원) 활동은 학업 연계 여부를 불문하고 예외적으로 자격외 활동허가를 통해 허용

- 5) 소속 대학이 아닌 외부 기관으로부터 학업과 무관한 연구 참여로 연구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,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필요

※ 반드시 연구(E-3)비자로 자격 변경 필수

비자종류	연구과제 수행기관	학업연계	학업무관
학위과정 유학생 D-2 (D-2-5제외)	소속대학 내	시간제취업 허가 면제	시간제취업 허가 필요
	소속대학 외 (대학 외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는 경우)	시간제취업 허가 필요	시간제취업 불가 E-3 자격으로 변경